



# 지방자치정보

■ 자료제공 :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지자행정팀장)

## [ 달라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0. 13. 대통령령 제16,576호>

### I.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발령하던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는 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모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삭제)

다.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시 유리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영 제13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2조

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의 2 신설)

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마다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는 데 그 중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상향조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초과부과금 중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종별부과금을 폐지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율을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함.(영 제15조, 현행 별표2 삭제, 안 별표3 및 별표7)

### 3.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시행령 등 개정령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1호>

#### I. 개정이유

· 농지법의 개정(1999. 3. 31, 법률 제5948호)으

로 농지의 임차료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0조 제2항·제22조제2항·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임차료, 임대차계약해지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

다. 종전에는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43조제2항 신설)

라. 한계농지정비사업용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용지, 민간영유아보육시설, 국가유공자 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2)

달라진 법령  
제 · 개정된 자치법규  
법령안 입법예고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

### 1. 개정이유

가. 앞으로 산업구조가 전문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여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590호)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제도와 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2조의 2내지 제12조의 5, 제27조 내지 제27조의 3 및 제39조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증 워드프로세서·속기·비서·직업상담사 등 사업서비스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의 상위등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당해 종목의 하위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하위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25조제2항)

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기술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영 제29조의 2)

라. 전문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사 등의 자격종목을 신설함.(영 별표1)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사업서비스 중 부기 및 주산종목의 폐지에 관해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 제 · 개정된 자치법규 ]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7호>

### 1.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소

지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을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맞추고, 지방인사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우대 승진제 및 공개경쟁신규임용자의 읍면동 임용원칙제 등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함.

## 2. 주요골자

- 가.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시 읍·면·동 우선임용규정을 삭제함.(종전규정 제22조의 2)
- 나.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우대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을 변경함.(제27조)
- 다.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요건을 일부 조정함.(별표4, 별표5, 별표15, 별표16)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증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8호>

## 1. 개정이유

- 가. 홍성지소가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기관명칭을 “홍성지소”에서 “공주지소”로 변경하고 위치도 “홍성군”에서 “공주시”로 변경함.
- 나. 관할구역도 종전 가축위생연구부가 담당하

던 관할구역을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는 공주지소가 담당하고, 통합지소 관할구역인 “예산군”을 인접된 가축위생연구부가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함.

## 2. 주요골자

가. 보건환경연구원 홍성지소를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공주지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관할구역을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으로 함.(별표2)

나. 보건환경연구원 통합지소의 관할구역을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으로 함.(별표2)

## 3.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예산군 관할구역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함.

### 충청남도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9호>

## 1. 개정이유

- 지방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 과간 통합 또는 일부 기능조정으로 인한 사무처리 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권한 배분에 의한

달라진 법령  
제·개정된 자치법규  
법령안 입법예고

사무의 추가·삭제 등을 일제히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면 개정함.

## 2. 주요골자

가. 과장의 일반적인 결재권의 배분 원칙 중 여성정책관의 전결 범위를 공보관·감사관·총무과장과 같이 실·국장 전결 사항까지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제6항)

나. 폐지 또는 기능이 조정된 실·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다시 분장된 실·과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과의 업무를 새로이 명정(제4조)

다.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무 중 도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정보실장의 합의를 거쳐도록 하고, 문서결재 절차 이행 및 시행 등 심사 규정을 둠.(제6조, 제9조)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0호>

##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 하부기관 명칭변경 등 전결권의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 2. 주요골자

가. “농업연구부”가 “기술개발국”으로, “농업기술부”가 “기술지원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규칙내용 중부장을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제2조,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및 별표)

나. 종축장을 축산시험장으로 현행 기관명칭에 맞게 개정함.(별표)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1호>

##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 2. 주요골자

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교관 명칭이 교수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일부 사무의 전결권을 조정함(별표)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2호>

###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 2. 주요골자

- 가. 가축위생연구부가 대전에서 흥성으로 이전하여 원장전결권을 연구부장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함.(별표)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3호>

###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 2. 주요골자

- 가. 임업생산연구담당과 자연학습담당을 신설

하여 임업시험과와 산림박물관에 각각 기능을 부여하여 조정함.(별표)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4호>

###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 2. 주요골자

- 가. “공영개발과”를 “개발과”로 하고, 하천담당을 신설하여 개발과에 기능을 조정함.(별표)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5호>

### 1. 개정이유

-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처리 조직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조

달라진 법령  
제·개정된 자치법규  
법령안 입법예고

## 정하고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에 맞게 새로이 위임을 명정하고 폐지되는 사무는 삭제함으로써
-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 자 전문을 개정함.

## 2. 주요골자

- 가. 행정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조정된 실과간 관광사무를 정비하여 명정.(별표1, 별표2)
-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업소관리, 관수·가공용 정부양곡관리, 제1·3종 어항시설 보수관리, 지정

폐기물 증명서류 확인 등 사무에 대하여 재위임 승인 절차를 거쳐 새로이 위임(별표1, 별표2)

다. 관광사업의 명의 이용허가, 공유수면관리 관련사무, 자기발행형 상품권 관리,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처리, 자기 건축물의 오수 정화시설 관리,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리 등 일부 사무가 규제완화 및 시·군 이양사무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별첨1, 별첨2)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 법령안 입법예고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5,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9-135호>

## I.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안에서 위임된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제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장(부단체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이내 지급,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안에서 지급.
  -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나.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 단축함.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순기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함.

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행정자치부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6, 행정자치부 공고 제 1999-139호>

## I.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민관련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 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임하고, 중앙정부 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나.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법인의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의 인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신고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업무에 관한 농림부 장관의 권한을 구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1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2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중 가족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 신청접수에 관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하는 등 28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6,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33호>

###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 등의 무질서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보전 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용적율·건폐율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함.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준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도시 지역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폐수 공장 등의 무질서한 입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방지함.

다. 준농림지역에서 개발계획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계획에는 학교·상하수도·도로 등을 3만제곱미터 이상의 연접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 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함.

라. 준농림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마. 자연경관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보전필요성의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용적율·건폐율·건축물의 층고제한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도모함.

바. 보전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은 제외)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중 지목상 대지에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에서는 종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폐교된 학교부지에 교육연구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 중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권한은 현행 1제곱킬로미터 미만에서 5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함.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1999. 10. 26,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9-334호>

#### 1.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가 폐지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용도지구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할 사항에 하천구역 및 전원개발예정지구 등을 새로이 포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소속교통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입안기준 중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함에 따라,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의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용지지구의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함.

다.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입안기준 중 낙농지대 및 초지조성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여야 할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에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및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등을 새로이 포함하고, 군용항고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는 비행안전구역과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함.